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회)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국가정보원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내보안정보’ 삭제·‘북한정보’ 신설 등 국가정보원법 개정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정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관간 협조관계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 범위 및 대상기관·절차 등을 규정한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정비 등(안 제1조, 제2조, 제3조)

- 1)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규정 제정 근거 조항이 변경된 것 반영
- 2) ‘국외정보’ 정의를 구체화하는 한편 ‘북한정보·심리정보·안보위해정보’ 정의 신설
- 3) ‘정보수사기관’을 △ 국가정보원 △ 정보사범 등 수사업무 취급 기관 △ 정보 또는 보안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명시 등

나.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제도 개선(안 제4조, 제4조의2)

그간 국가정보원이 단독 작성·배포 해오던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를 ‘국가 안전보장회의 보고·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개선하고,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관련 협의회를 신설

다. 조정대상 부처 및 업무 현실화(안 제5조)

‘정보환경·업무 현실 변화’ 등을 반영, 조정대상 부처를 변경(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각각 삭제 및 기획재정부 추가)하고, 부처 대상 조정업무를 현실화

라. 정보사범 등 조정 업무(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정보수사기관이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한 ‘신병 처리·공소보류 의견을 제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 조정’을 받던 것에서 ‘국가정보원장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 내용을 반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대검찰청·경찰청 등 유관기관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일부개정령안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3) 입법예고(2023. 8. 23 ~ 2023. 10. 2)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일부개정령안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을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조제4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 및 지지등 각 부문”을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기술·운송·통신·지리·인물·환경·보건 등에 관한 정보와 해당 사항이 국가안보·국익·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북한정보”라 함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기술·운송·통신·지리·인물·환경·보건 등에 관한 정보와 해당 사항이 국가안보·국익·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 “심리정보”라 함은 국가안보·국익·국민 안전을 목적으로 국외 및 북한 구성원의 감정·견해·태도·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4. “안보위해정보”라 함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조제7호의 정보사범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7. “정보사범 등”이라 함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동법 제80조 군사기밀누설의 죄, 동법 제81조 암호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와 그 혐의를 받는 자를 말한다.

8. “정보수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각급 국가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정보원

나. 정보사범 등의 수사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다. 정보 또는 보안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제3조 중 “국가정보 및”을 “정보 및”으로, “관한”을 “관한 국가”로, “수행하며, 동”을 “수행하며,”로, “통합기능수행”을 “통합 기능수행”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작성”을 “수립”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수립) ①국정원장은 매년말까지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협의회를 두며 위원장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위원은 국정원 직원과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를 배포받는 기관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③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수립 절차 및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제5조제2호가목 중 “국외정보의 수집”을 “국외정보·북한정보”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재외국민”을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재외국민”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이북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북한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을 “안보위해정보”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은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국외정보·국내보안정보·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를 “국외정보·북한정보·심리정보·안보위해정보·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군인 및 군무원의 신원 조사업무지침”을 “신원조사”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내사”를 “내사·입건전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작성”을 “안보위해정보”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내사”를 “입건전 조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신원조사업무”를 “신원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국외정보의 수집”를 “국외정보·북한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작성”을 “안보위해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해양수산부

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의 입건전 조사·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다.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3. 기획재정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정보사범등의 내사”를 “정보사범 등의 내사·입건전 조사”로 하고, “검거”를 “입건”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조정을 받아야”를 “의견을 들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요

정보사범등·귀순자·불온문건 투입자·납북귀환자·망명자 및 피난사민에 대하여 신문등”을 “군사분계선 월선자·귀환납북자·망명자·주요 정보사범 등 및 주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신문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를 “국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불송치 결정된 사건”으로 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송치 결정된 사건”으로 한다.

제10조 중 “불온문건”을 “안보위해 표현물”로 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국정원장은 정보 및 보안업무 성과가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중 “정보조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원장”을 “국정원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하고, 제6조제2항·제10조 및 제18조제3항 중 “제2조제5호”를 각각 “제2조제7호”로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6항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보및보안업무기획 · 조정규정</u> 제1조(목적) 이 영은 <u>국가정보원법</u>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 · 조정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1. “국외정보”라 함은 <u>외국의 정 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군사 · 과 학 및 지지등 각 부문에 관한 정 보를 말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 조정 규정</u> 제1조(목적) -----<u>국가정보원법</u> <u>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조제4항</u> <u>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u> -----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u>정 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군사 · 과 학 · 기술 · 운송 · 통신 · 지리 · 인 물 · 환경 · 보건 등에 관한 정보 와 해당 사항이 국가안보 · 국익 ·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u> -----. 2. “북한정보”라 함은 <u>북한의 정 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군사 · 과 학 · 기술 · 운송 · 통신 · 지리 · 인 물 · 환경 · 보건 등에 관한 정보 와 해당 사항이 국가안보 · 국익 ·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u> 3. “심리정보”라 함은 <u>국가안보 · 국익 · 국민 안전을 목적으로 국 외 및 북한 구성원의 감정 · 견해 · 태도 ·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 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u>

<신 설>

3. “통신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신·분석하여 산출하는 정보를 말한다.

4. “통신보안”이라 함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

<신 설>

4. “안보위해정보”라 함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조제7호의 정보사범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5. -----

-----.

6. -----

-----.

7. “정보사범 등”이라 함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동법 제80조 군사기밀누설의 죄, 동법 제81조 암호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와 그 혐의를 받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등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동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한다.

제4조(기획업무의 범위) (생략)

1. ~ 2. (생략)

3.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작성

4. ~ 6. (생략)

8. “정보수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각급 국가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정보원

나. 정보사범 등의 수사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다. 정보 또는 보안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제3조(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
-----정보 및-----
관한 국가-----
--수행하며, -----
-----통합 기능수행 -----

-----.

제4조(기획업무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수립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5조 (생 략)

1. (생 략)

가. ~ 다. (생 략)

제4조의2(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수립) ①국정원장은 매년말까지 국
가 정보목표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효율
적 수립을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
로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협의
회를 두며 위원장은 국정원 기획
조정실장, 위원은 국정원 직원과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를 배포받
는 기관의 실·국장급 이상 공무
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③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수립
절차 및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제5조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외교부

가. 국외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나. (생략)

다. 재외국민의 실태에 관한 사항

라.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통일부

가. ~ 나. (생략)

다. 이북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
·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라. (생략)

4. 법무부

가.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에 관한 사항

나. ~ 바. (생략)

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 국방부

가. 국외정보·국내보안정보·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외교부

가. 국외정보·북한정보-----

나. (현행과 같음)

다.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재외
국민-----

라. 삭제

3. 통일부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북한정보-----

라. (현행과 같음)

4. 법무부

가. 안보위해정보-----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삭제

5. 국방부

가. 국외정보·북한정보·심리정
보·안보위해정보·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

나. (생략)

다. 군인 및 군무원의 신원조사업
무지침에 관한 사항

라. 정보사범 등의 내사·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6. 행정안전부

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
합)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의 내사·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다. 신원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라. (생략)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신문·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
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라.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나. (현행과 같음)

다. 신원조사-----

라. -----내사·입건전
조사-----

6. 행정안전부

가. 안보위해정보-----

나. -----입건전 조사-----

다. 신원조사-----

라. (현행과 같음)

7.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8. 산업통상자원부

국외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9. 국토교통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10. 해양수산부

가. <신 설>

나. <신 설>

다. <신 설>

11. 삭제

12. 방송통신위원회

가.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통신정보 및 통신보
안 업무에 관한 사항

13. <신 설>

<신 설>

8. 산업통상자원부

국외정보·북한정보-----

9. 국토교통부

안보위해정보-----

10. 해양수산부

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의 입건전 조사·
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다.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1. 삭제

12.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13. 기획재정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관련 기관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① 정보수사기관이 정보사범등의 내사·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검거한 때와 관할 검찰기관(군검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치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①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정보수사기관이 주요정보사범 등·귀순자·불온문건 투입자·납북귀환자·망명자 및 피난사민에 대하여 신문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14. -----

(현행과 같음)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① -----정보사범 등의 내사·입건전 조사----- 입건-----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① -----

----- 의견을 들어야 -----.

② ----- 군사분계선 월선자·귀환납북자·망명자·주요 정보사범 등 및 주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신문 등-----

-----.

제9조(공소보류 등) ① 정보수사기관(검사를 제외한다)의 장이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공소보류 의견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② 검사는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공소보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소추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공소보류 또는 불기소 처분할 때에는 국정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정보수사기관이 주요 적성장비 또는 불온문건 기타 금품을 압수하거나 취득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고 정보수집에 필요한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정보사업·예산 및 보안업무의 감사)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제9조(공소보류 등) ① -----

-----국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불송치 결정된 사건-----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송치 결정된 사건-----

-----.

제10조(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

안보위해 표현물 -----

-----.

제11조(정보사업·예산 및 보안업무의 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⑤ <신 설>

제12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정보조정협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신 설>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⑤ 국정원장은 정보 및 보안업무 성과가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
-----국정원장-----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하고, 제6조제2항 · 제10조 및 제18조제3항 중 “제2조제5호”를 각각 “제2조제7호”로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6항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일부개정안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조제4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외정보”라 함은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기술·운송·통신·지리·인물·환경·보건 등에 관한 정보와 해당 사항이 국가안보·국익·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북한정보”라 함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기술·운송·통신·지리·인물·환경·보건 등에 관한 정보와 해당 사항이 국가안보·국익·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 “심리정보”라 함은 국가안보·국익·국민 안전을 목적으로 국외 및 북한 구성원의 감정·견해·태도·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4. “안보위해정보”라 함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조제7호의 정보사범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5. “통신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신·분석하여 산출하는 정보를 말한다.

6. “통신보안”이라 함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

7. “정보사범 등”이라 함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동법 제80조 군사기밀누설의 죄, 동법 제81조 암호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와 그 혐의를 받는 자를 말한다.

8. “정보수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각급 국가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정보원

나. 정보사범 등의 수사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다. 정보 또는 보안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제3조(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은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국가 정책의 수립등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한다.

제4조(기획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기획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기본정보정책의 수립

2. 국가 정보의 중·장기 판단
3.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수립
4.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5. 정보예산의 편성
6.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본지침 수립

제4조의2(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수립) ①국정원장은 매년말까지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협의회를 두며 위원장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위원은 국정원 직원과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를 배포받는 기관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③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수립 절차 및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나. 북한 및 외국의 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

다.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2. 외교부

가. 국외정보·북한정보에 관한 사항

나.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다.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재외국민의 실태에 관한 사항

라. 삭제

3. 통일부

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남북대화에 관한 사항

다. 북한정보에 관한 사항

라.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4. 법무부

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에 관한 사항

라. 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정보사범 등의 보도 및 교도에 관한 사항

바.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사. 삭제

5. 국방부

가. 국외정보·북한정보·심리정보·안보위해정보·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제4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사항

다.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라. 정보사범 등의 내사·입건전 조사·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6. 행정안전부

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의 입건전 조사·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다.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라.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7.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8. 산업통상자원부

국외정보·북한정보에 관한 사항

9. 국토교통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10. 해양수산부

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의 입건전 조사·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다.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1. 삭제

12.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13. 기획재정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관련 기관

정보 및 보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조정절차) 국정원장은 제5조의 조정을 행함에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안에 관하여는 직접 조정하고, 기타 사안에 관하여는 일 반지침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7조(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① 정보수사기관이 정보사범 등의 내사·입건전 조 사·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입건한 때와 관할 검찰기관(군검찰기관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 송치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즉 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의 재판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 그 재판결 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①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정보수사기관이 군사분계선 월선자·귀환납북자·망명자·주요 정보사범 등 및 주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신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공소보류 등) ① 정보수사기관(검사를 제외한다)의 장이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공소보류 의견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검사는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공소보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불송치 결정된 사건을 소추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송치 결정된 사건을 공소보류 또는 불기소 처분할 때에는 국정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정보수사기관이 주요 적성장비 또는 안보위해 표현물 기타 금품을 압수하거나 취득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고 정보수집에 필요한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정보사업·예산 및 보안업무의 감사) ① 국정원장은 제5조에 규정된 각급 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사업 및 그에 따른 예산과 보안업무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보안업무 감사는 중앙단위 기관에 한한다.

② 국정원장은 제1항의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책자료 발굴에 중점을 둔다.

③ 국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피감사 기관에 통보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정원장은 정보 및 보안업무 성과가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하고, 제6조제2항·제10조 및 제18조제3항 중 “제2조제5호”를 각각 “제2조제7호”로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6항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정보원	
연 락 처	(02) 3412 - 9551